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8. 20.(목) 11:30 배포 2026. 8. 18.(화) 09:00

‘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’ 정조준...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

- 34,628개 중 **6,683개**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**활성화 상태**
- 한국어 운영 등 한국 관련 사이트 1,316개, **한국인 관련 영상 215만 개 추정**
- 도박·성매매 등 **배너 광고 40,686개** 게재...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
- **수사·처벌 강화**, 광고금지·계좌정지를 통한 **수익 차단**, **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등 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**

□ 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, 경찰청(청장 직무대행 유재성)과 함께 ‘**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***’(이하 ‘범정부 협의체’)를 통해 확정된 **「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」**을 20일(목)에 확정·발표하였다.

* 성평등부, 방미통위, 경찰청, 방미심위 기관장으로 구성('26.6.9 출범)

□ 정부는 불법촬영물 **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**하고, **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**가 존재하는 한 **재유포가 반복**되어 **디지털성범죄 피해가 재발**하고, 피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○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**34,628개 불법사이트의 피해 규모**, **운영 형태**, **수익 구조** 등을 **심층 분석**하고, 문제점을 확인하여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**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**을 마련하였다.

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

□ **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을 분석**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('18.5~'26.5) **34,628개 사이트**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**27건의 수사자료**를 중심으로 **양적, 질적 분석을 병행**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〈34,628개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 가능〉

□ 분석대상 34,628개 사이트 중 **6,683개(19.3%)가 접속이 가능**했으며, 그 중 **3,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**하였다.

<불법사이트 규모>

(단위: 개, %)

구 분		사이트 수	비율
접속 가능 사이트		**6,683**	**19.3%**
국내 상용망 접속 가능		3,832	(11.1%)
VPN 우회경로만 접속 가능		2,851	(8.2%)
접속 불가 및 기타 유형		**27,945**	**80.7%**
접속불가	운영 중지	14,615	(42.2%)
	접속 오류	2,906	(8.4%)
	도메인 재판매 페이지	761	(2.2%)
기타유형	도박 등 타 유형	9,624	(27.8%)
	일반 커뮤니티	39	(0.1%)
합계		**34,628**	**100%**

※ 국내 상용망은 KT, VPN은 PROTON.JP 기준으로 통계 산출

○ 특히 접속가능 사이트 6,683개 중 **한국어로 운영(300개)**되거나, 타 언어이나 ‘Koreanporn’ 등 **한국 관련 카테고리**가 있는 사이트는 **1,316개**로 확인되었으며 게시된 **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 개로 추정**된다.

○ 또한 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, 직업, 거주지역, 연락처,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**신상정보도 함께 게시**되어 **피해가 심각**했다.

〈불법촬영물 유통을 구조적으로 유도,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 식별〉

□ 불법사이트들은 **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게시**하거나, 불법촬영물을 **구입·저장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**하는 **파일 공유 형태의 무료 개방형**과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**유료 회원제 형태**로 운영된다.

○ 무료개방형은 콘텐츠를 복제한 **백업사이트를 운영**하며, **다량의 영상물을 동시 유포**하고, **‘도촬·N번방’ 등의 성착취 카테고리**를 별도 운영하며 주로 도박 등 **배너광고를 통해 수익**을 얻는 구조이다.

○ 한편, **유료회원제**는 등급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을 제한하고, **영상물 업로드, 도박사이트 가입, 암호화폐 등**을 통해 **포인트를 획득**하여 등급을 올리는 구조로 **불법촬영물 유포를 구조적으로 유도**하며, **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하는 통로 역할**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.

□ 화면에 표시된 정보뿐 아니라, **웹 구조·도메인·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**하여 표면상 유사성이 없으나, **20개 이상 사이트를 동시 운영**하는 등 **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을 식별**하였다.

○ 또한 불법성이 확인되어 국내망에서 **접속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** 약 **3~7년간 운영이 지속**되었으며, 불법사이트 개발, 운영, 불법촬영물 유통, 자금인출 행위가 **분업 형식으로 구성**되어 다수 피의자가 존재했다.

<경찰청 검거 사례>

경찰청(보도일)	운영 기간	이용 규모
경기북부청('24.5.)	약 4년	일평균 약 2만명
대전청('25.6.)	약 7년	일평균 약 3만 6천명
경기남부청('26.5.)	3년 9개월	가입 계정 약 54만명

〈도박·성매매 배너 광고 40,686개로 광고가 주 수익원, 범죄수익 약 304억원〉

□ 국내망으로 접속되고, 배너광고가 게재된 1,674개의 사이트에 **도박·성매매 등 배너광고 40,686개가 게재**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.

○ '21년 이후 경찰에서 검거한 27건 126개 불법사이트 수사자료 분석 결과, **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**은 **배너 광고** 수익으로, **약 304억 원**에 달했으며,

○ 각 사이트에 **평균 34.7개,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**되어 있으며,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할 때, **최소 약 연 2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**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.

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

□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처벌·수사 강화로 불법 생태계 근절

□ 불법사이트가 **성착취물 확산·재생산의 근원**이 되고 있음에도 **불법사이트 개설·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부재**로 성착취물 제작·유포의 방조범으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

○ **불법사이트 개설 행위**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**독립 범죄화**해 방조범이 아닌 **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**을 **검토**하고,

○ **'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'을 신설**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**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**하여 **수사 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**를 통해 **피해를 신속하게 중단**시킬 수 있도록 호주·영국 등에서 시행* 중인 **능동적 방어 제도**[합법적 해킹] **도입**도 **적극 검토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▸ **(호주)**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를 식별·교란(데이터 추가, 삭제, 계정 장악 등)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·차단할 수 있는 권한 신설(Surveillance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1)
▸ **(영국)** 수사권한법을 통해 장비 간섭(Equipment Interference) 영장으로 국가 기관의 해킹 허용 (Investigatory Powers Act 2016)

2.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등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

□ 불법사이트가 **성착취물을 이용해 결제를 유도**하고, **도박·성매매 배너광고**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고 있어 **수익원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**하다.

○ 우선 **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**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**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추진**하여 수익을 차단할 계획이다.

○ 더불어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의 **'강화된 고객확인제도'를 활용**,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**계좌에 대한 거래정지** 추진을 통해 불법사이트 **돈줄을 차단하여 사이트 자체 무력화**에 **총력**을 기울일 예정이다.

□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**美연방거래위원회**(FTC, 플랫폼 규제 담당)에 **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**를 위한 **전담 체계를 마련**하고,

○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**해외 호스팅·CDN 사업자**에게 **부처 공동**(성평등부, 경찰청, 방미통위)으로 **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**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.

□ 또한,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**이용자ID, IP 주소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** 하고,

○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, **플랫폼-호스팅-CDN-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** 방안을 검토한다.

- CDN(Contents Delivery Network):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 이용,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는 기술
- ISP(Internet Service Provider): 인터넷 접속하도록 통신회선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

3.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

□ 불법사이트들이 차단을 하더라도, **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**하는 이른바 **'도메인셔틀링'**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

○ **도메인셔틀링 방식을 분석·예측**하여 **자동 탐지**하고, 사이트 간 **유사도 및 불법성 분석**을 통해 **차단 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**할 수 있도록 AI 기반 **불법사이트 숏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**을 추진한다.

범정부 활용 AI 기반 불법사이트 숏주기 대응 기술 개발

- (필요성) 수익 모델을 공유하는 온라인 범죄 생태계 무력화를 위해 부처별 공동 대응 필요
- (내용) 탐지·수집→동일성·계보 분석(다차원 핑거프린팅 기반)→수익원·범죄네트워크 역추적→의사결정 지원(긴급차단·신속심의·수사연계)을 관통하는 불법사이트 숏주기 대응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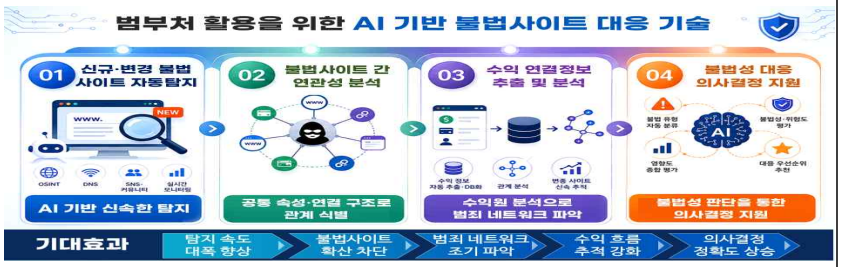

- (활용방안) 불법사이트 URL·Real IP 등 다차원 특성 분석을 통한 범죄단체 그룹화(수사활용), 대체·우회 방식 극복(유사사이트 긴급차단·신속심의), 배너광고 사이트 차단으로 수익 차단

○ 또한, **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**의 **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공유**받아 **불법성을 확인하여 차단 조치**하는 한편, **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 구축**을 통해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 **사전 차단, 해당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**을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**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**에 대해서는 **성평등부장관이 직접** 기간통신사업자에게 **접속 차단을 요청**할 수 있도록 **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**하고,

○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**동일·유사사이트**는 **기 심의로 간주, 신속 차단을 추진 할 계획**이다.

○ 또한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QUIC, ECH 등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한 **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을 검토**하고, **비복호화 기반 암호 트래픽 분석 등 기술 개발을 추진**한다.

4.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

□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**불법촬영물 소지·시청·저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**를 위해

○ **불법사이트 접속·이용 근절 캠페인을 추진**하고,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**정책을 제안하고, 불법사이트도 제보하는 국민 소통 창구를 '디지털성범죄STOP 통합누리집'과 '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'**에 **상시 운영**할 예정이다.

○ 또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**국민 의견*을 적극 반영**하여 **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**하여 초·중·고·대학 등에 배포하고, **대학생 대상 참여형 교육을 활성화**하는 한편,

- **초·중등학교 현장 지원단**을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을 점검하고, **학교 맞춤형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지원**할 계획이다.

*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국민제안('26.7.27~8.2, 네이버 공익광고 활용): 총 104명 참여
☞ (주요 제안 유형) 가해자 처벌 강화 42.6%, 예방 교육 21.7%, 삭제·차단 7.0%

□ 정부는 **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**와 매월 개최하는 **실무협의체**를 통해 대책의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,

○ 중장기적으로 **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**을 위해 **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, 삭제 명령, 사업자 제재, 예방적 감독권** 등을 망라한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“이번 **심층분석**을 통해 그동안 짐작만 해왔던 **불법사이트의 조직적·기업화된 실체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**되었다”며,

○ “**피해자의 성착취물**이 **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** 수익 차단,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, 처벌 강화 등 **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“**디지털성범죄**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**중대한 인권침해 범죄**이며,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는 **불법사이트**는 **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피해를 반복시키는 핵심 경로**”라며,

○ “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, 유통 방지, 삭제·차단, 수사까지 **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**하고, **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**”고 밝혔다.

□ 유재성 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“**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**들은 사이버도박, 불법 성매매 등 **불법 콘텐츠들의 관문 역할**을 하며 광범위한 **불법 수익을 공유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**하고 있다”라며

○ “경찰청은 최근 검거 사례와 같이 **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**를 펼쳐 **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** 시키겠다”고 밝혔다.

【붙임】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개요

담당	<총괄>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	책임자	부단장 노 현 서 (02-2100-6211)
		담당자	사무관 김 창 후 (02-2100-6212)
			사무관 김 재 호 (02-2100-6214)
			경 정 박 광 선 (02-2100-6213)
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 김 우 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 신 윤 재 (02-2110-1549)
	경찰청 사이버수사과	책임자	과 장 이 기 범 (02-3150-1605)
		담당자	경 정 조 성 실 (02-3150-165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**